##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0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송기헌・황운하・이광재

김남국 • 김민기 • 김성주

조승래 • 이탄희 • 김승원

김종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정폭력행 위자에 대한 유치장 수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 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 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안 제3조의2 및 제63조제 3항 신설).
- 다.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 마.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 바.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 사.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 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및 제65조제4호 삭제).

법률 제 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를 "죄"로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

- 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고,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제5조제1호 중 "분리 및 범죄수사"를 "분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을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로 한다.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제8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9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상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로, "법정대리인"을 "법정대리인이나 가정구성원"으로,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법정대리인"을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의료기관 및 요양소"를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으로 한다.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제1항제4호"를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가정구성원이 나 그 주거·직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제55조의3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보호처분"을 "임시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③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8조의2, 제29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	3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	사
거침입의 <u>죄 중 제321조</u>	<u>স</u>
(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같음)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	차
괴의 죄 중 <u>제366조(재물</u>	제366조(재물
손괴등)의 죄	<u>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u>
	<u>괴)제1항의 죄</u>
<u>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u>	<u>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중처벌되는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u>영) 및 제15조(미수범)(제1</u>
	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u>최</u>
<u>&lt;신 설&gt;</u>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신 설>

4. ~ 8. (생 략) <신 설>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죄

4. ~ 8. (현행과 같음)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 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고, 형의 집행유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의 <u>분리 및 범</u> <u>죄수사</u>

<신 설>

<u>⑥</u>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
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
<u>ŏ}</u>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
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1
<u>분리</u>
<u>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u>
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u>범죄수사</u>

- 2. 3. (생략)
-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 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 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 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u>또는 사법경찰관의</u> 신청에 의 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 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 해자 또는 그 <u>법정대리인</u>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에-----

2.	· 3.	(연	앵과	· E	音,	)			
4.									
	따른	. 임	시조	:치	를	신.	청ㅎ	<u> </u>	나
	제55	조의	2에	П	른	피	해ス	上上	호
	명령	또.	는 김	신변	[안]	전조	カ	를	청
	<u> 구</u>								
제8	조(임	]시 <sup>3</sup>	ミオ	기	청구	나등	-) (	1	
_									
_									
_									
_								- <u>제</u>	<u>29</u>
<u>3</u>	<u> </u>	항제	1호·	제2	<u>호·</u>	제3.	호	또	는
<u>ス</u>	<u> [5호</u>								
_		•							
<	삭	제>							

② 제1항의-----------법정대리인이나 가정 <u> 구성원-----제1항</u>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 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 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 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 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 제2항	
	<u>제1항에</u>	
제82	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u>법정</u> 다	
	 는 가정구성원 <u>제2</u>	
	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del>:</del> 제5
<u>오</u> 	<u>. )</u>	
	)·③ (현행과 같음)	
^¶Z9 	)조(임시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 2. 피해자 또는 <u>가정구성원의</u><u>주거, 직장</u>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 금지
- 3. ~ 5. (생략)

<신 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⑦ (생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u>가정구성원이나</u>
<u>그 주거·직장</u>
3. ~ 5. (현행과 같음)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 ④ (현행과 같음)
5
<u>제4호부터 제6호까지</u>
<u>제4호부터 제6호까지</u>
세4조기에 제0조까지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
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8)	•	$\bigcirc$	(생	략)

- ①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 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 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8항에 따라 임시조 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 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 1항제4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 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 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 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u>⑨</u> ・ <u>⑩</u> (현행 제8항 및 제9형	}-
과 같음)	
<u> </u>	0
항	_
	_
	_
	_
① 제1항제4호 및 제6호	_
의료기관, ડ	
양소 및 상담소등	_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
① <u>제29</u> 조제 <u>9항</u>	_
	_
	_
	_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지	all
1항제4호 및 제6호	
1 8 개 4 <del>文                                 </del>	_
	_
	_
	_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u>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피해자 또는 <u>가정구성원의</u><u>주거, 직장</u>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 3.·4. (생략) <신설>
  - ② ~ ⑥ (생 략)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

  1. (현행과 같음)
2 <u>가정구성원이나</u> <u>그 주거·직장</u>
<ul> <li>3. · 4. (현행과 같음)</li> <li>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li> <li>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li> <li>② ~ ⑥ (현행과 같음)</li> </ul>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 간) ①
<u>1</u> 년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 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신 설>

<u>1. · 2.</u> (생 략)

② (생략)

<u><신 설></u>

<u>.</u>
②
3મું
 제63조(임시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
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